

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95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1996. 2.

발 의 자 : 의회운영위원장
위 원

□ 개 정 사 유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('96. 2. 13)됨에 따라 이에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함.

□ 주 요 골 자

-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의 명칭을
“지역경제국을 공업경제국으로, 민방위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,
보사환경국을 보건환경국으로, 가정복지국을 사회복지국”으로 변경하고
- 과단위로 하향조정된 국제통상협력실은 기획관리실에 통합.

□ 참 고 자 료

- 충청북도 조례 제2250호

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다목중 “의회규칙”을 “회의규칙”으로 하며,

제2호가목중 “국제통상협력실”을 삭제하고 “지역경제국”을 “공업경제국”으로,
다목중 “국제통상협력 및 지역경제에”를 “공업경제사무에”로 하고,

제3호가목중 “민방위국”을 “민방위재난관리국”으로 나목중 “내무행정에 관한 사항”을 “내무, 민방위재난관리, 소방, 공무원교육 사무에 관한 사항”으로 하며,

제4호가목중 “보사환경국, 가정복지국”을 “보건환경국, 사회복지국”으로,
나목중 “교육사회 및 보건에 관한 사항”을 “교육사회 및 보건환경사무에 관한 사항”으로 하고,

제5호나목중 “농정 및 진흥원에 관한 사항”을 “농정 및 농촌진흥사무에 관한 사항”으로 하고,

제6호나목중 “건설교통개발에 관한 사항”을 “건설교통개발사무에 관한 사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